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9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개정이유

비슬산유스호스텔 단체 이용객의 기준을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여 비슬산유스호스텔의 단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단체”의 정의를 “40명”에서 “20명”으로 변경(안 제3조, 안 제13조제1항)
- 나. 부대시설에 중회의실 추가(안 별표 1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10. 4. ~ 10. 24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4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4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비슬산유스호텔 사용료(제12조 관련)

○ 객실

(기준: 1박)

구 분	면적 (㎡)	정원 (명)	요 금 (원)		비 고
			청소년	일반인	
싱글룸(장애인, 일반) 더블룸, 트윈룸	24.57	2	80,000	100,000	
트리플룸, 디럭스룸	24.57	3	110,000	130,000	다락방 제공 (15.43㎡)
패밀리룸(양실, 한실)	24.57	4	100,000	120,000	
스위트룸(양실, 한실)	49.14	8	150,000	180,000	
◎ 객실 정원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 징수(6세 미만 추가요금 없음) - 6세부터 12세까지 : 5,000원 / 13세 이상 : 1만원 ◎ 1박은 당일 15:00 ~ 다음날 12:00까지(초과 시 1박 요금 추가) ◎ 청소년 동반가족은 일반인 요금 적용					

○ 부대시설

구 분	면적(㎡)	정원(명)	요금(원)	1회 사용시간	비 고
대강당	504.18	500	30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 당 5만원
중회의실	73.71	20	10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 당 2만원
소회의실	24.57	10	5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 당 1만원

※ 추가사용요금은 1회 사용시간을 넘어 2시간 범위까지 추가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며, 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요금 전액을 추가하여 받음

○ 식 대

구 분	기 준	요 금 (원)	비 고
한 식	1식	30,000	메뉴 이외 별도 주문 건에 대해서는 협상요금 적용
양 식	1식	50,000	
뷔 페	1식	50,000	

○ 수련활동지도비

구 분	기 준	요 금(원)	비 고
수련활동 지도비	1인 당일 1프로그램	6,000	○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추가요금 적용
	1인 1박 2일	10,000	○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가

※ 이상 각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“단체”란 <u>40명</u> 이상이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<u>20명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사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용료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감면율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<u>40명</u> 이상 단체 사용자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3조(사용료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20명</u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1] (제12조 관련)

비슬산유스호텔 사용료(부가가치세 별도)

○ 객실

구 분	면적 (㎡)	정원 (명)	요 금 (원)		비고
			청소년	일반인	
싱글룸(장애인, 일반)	24.5	2	80,000 이하	100,000 이하	
더블룸, 트윈룸	7				
트리플룸, 디럭스룸	24.5	3	110,000 이하	130,000 이하	다락방 제공 (15.43㎡)
패밀리룸(양실, 한실)	24.5	4	100,000 이하	120,000 이하	
스위트룸(양실, 한실)	49.1	8	150,000 이하	180,000 이하	

◎ 객실 정원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 정수(만 6세 미만 추가요금 없음)

- 만 6세(초등학생) 이상 : 5,000원 / 중학생 이상 : 1만원

◎ 1박은 당일 15:00 ~ 다음날 12:00 까지(초과 시 1박 요금 추가)

◎ 청소년 동반가족은 일반인 요금 적용

○ 부대시설

구 분	면적(㎡)	정원(명)	요금(원)	1회 사용시간	비 고
대강당	504.1	500	300,000 이하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당 3만원
소회의실	24.57	10	50,000 이하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당 1만원

○ 식 대

구 분	수 량	요 금(원)	비 고
한 식	1식	30,000이하	메뉴 이외 별도 주문 건에 대해서는 협상요금 적용
양 식	1식	50,000이하	
뷔 페	1식	50,000이하	

○ 수련활동지도비

구 분	수 량	요 금(원)	비 고
수련활동지도비	1인 당일	6,000이하	○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추가 요금 적용 ○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가
	1인 1박 2일	10,000이하	

[별표 1]

비슬산유스호텔 사용료(제12조 관련)

○ 객실

(기준: 1박)

구 분	면적 (㎡)	정원 (명)	요 금 (원)		비고
			청소년	일반인	
싱글룸(장애인, 일반)	24.5	2	80,000	100,000	
더블룸, 트윈룸	7				
트리플룸, 디럭스룸	24.5	3	110,000	130,000	다락방 제공 (15.43㎡)
패밀리룸(양실, 한실)	24.5	4	100,000	120,000	
스위트룸(양실, 한실)	49.1	8	150,000	180,000	

◎ 객실 정원 초과 시 1인당 추가 요금 정수(6세 미만 추가요금 없음)

- 6세부터 12세까지 : 5,000원 / 13세 이상 : 1만원

◎ 1박은 당일 15:00 ~ 다음날 12:00까지(초과 시 1박 요금 추가)

◎ 청소년 동반가족은 일반인 요금 적용

○ 부대시설

구 분	면적(㎡)	정원(명)	요금(원)	1회 사용시간	비 고
대강당	504.1	500	30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당 5만원
중회의실	73.71	20	10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당 2만원
소회의실	24.57	10	50,000	4시간	추가 사용시 시간당 1만원

※ 추가사용요금은 1회 사용시간을 넘어 2시간 범위까지 추가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며, 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요금 전액을 추가하여 받음

○ 식 대

구 분	기 준	요 금 (원)	비 고
한 식	1식	30,000	메뉴 이외 별도 주문 건에 대해서는 협상요금 적용
양 식	1식	50,000	
뷔 페	1식	50,000	

○ 수련활동지도비

구 분	기 준	요 금(원)	비 고
수련활동지도비	1인 당일 1 프로그램	6,000	○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추가요금 적용 ○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가
	1인 1박 2일	10,000	

※ 이상 각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